#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9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문대림·강득구·김 윤

임오경 • 주철현 • 박용갑

이병진 • 서삼석 • 윤준병

김한규 · 신정훈 · 이원택

민병덕 • 박해철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 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6(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해외에서 목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목재생산업체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생산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해당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

재제품에 대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가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산림훼손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목재펠릿의 원산지 등 공개)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펠릿의 원산지, 목재제품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실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9조의6(합법벌채 확인을 위한현지실사)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확인하는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목재생산업체의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

<신 설>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해당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 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원산 국 정부 또는 해외목재생산업 체가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산림훼손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목재펠릿의 원산지 등장개)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펠릿의 원산지, 목재제품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